|  |  |  |
| --- | --- | --- |
| 2021년 4월 9일 | | |
| **수신** | : | 신한대체투자운용 주식회사 / 한화자산운용 주식회사 |
| **참조** | : | 고승지 부장님 / 방 대 경 차장님 |
| **제목** | : | Project Moore 투자 관련 대출약정에 대한 검토  (Our Ref. No.: K01720-2010) |

위 제목의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저희들의 의견을 드립니다.

**I. 검토의 배경 및 요지**

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합니다)상 집합투자업자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각 “**본건 국내펀드**”라 합니다)를 설정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본건 국내펀드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의 방법으로 호주 및 미국 4개의 PPP 사업 자산에 대한 지분 투자 및 후순위대출 등의 방식으로 운용되는 Aberdeen Global Infrastructure Partners LP (이하 “**본건 역외펀드**”라 합니다)에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투자(이하 “**본건 투자**”라 합니다)하고자 합니다.

본건 투자와 관련하여 대주(Lender)로서 본건 국내펀드는 차주(Borrower)로서 본건 역외펀드 및 대리기관(Agent) 겸 담보대리기관(Security Agent)으로서 CSC Trustees Limited와의 사이에 별첨 대출 채권 주요 Term (이하 “**본건 금융조건**”이라 합니다)에 따라 작성된 Facility Agreement (이하 “**본건 대출약정**”이라 합니다)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본 법률의견서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본건 대출약정 초안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귀사가 제공한 본건 금융조건 및 본건 대출약정 초안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저희들의 검토 의견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검토의견**

본 법무법인은 본 법률의견서를 드림에 있어서 본건 대출약정과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합의는 본건 금융조건 및 본건 대출약정 초안에 기재된 내용이 전부이고 그 외에 당사자 사이에 달리 합의된 사항이나 별도의 거래 기타 본건 대출약정과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이면 약정도 존재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계약은 본래 양 당사자간의 협상의 결과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계약서의 각 조항들은 어느 일방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게 되며, 가령 어느 한 조항이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만을 놓고 평가할 수는 없고 계약서의 다른 조항들을 함께 고려하여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건 대출약정 역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준비되고 체결될 예정인 것으로 이해되며, 이와 같은 측면을 전제로 검토하였을 때, 본건 대출약정의 내용 중 대주(Lender)로서의 본건 국내펀드 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거나 관련 법령상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들의 의견을 드리오니, 이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세 종

담당변호사 양 승 규

담당변호사 유 나

참조수신: 미국변호사 신 성

**별첨.**

**본건 금융조건**

|  |  |
| --- | --- |
| **항목** | **내용** |
| **당사자** | • 차주: Aberdeen Global Infrastructure Partners LP(“AGIP”)  • 대주: 농협은행 주식회사(신한AIM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0호의 신탁업자로서)  농협은행 주식회사(한화 미국 호주 PPP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의 신탁업자로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에서 총액인수 예정  • 대리기관: CSC Capital Markets (Ireland) Limited  • 담보대리기관: CSC Trustees Limited |
| **대출약정금** | • 아래 각 대출약정금의 한도 내에서 대출금 인출 가능   * USD 103,850,896.50 (USD 51,925,448.25는 신한펀드에서, USD 51,925,448.25는 한화펀드에서, 즉 각 50%씩 대출약정) * AUD 161.489,774.10 (AUD 80,744,887.05는 신한펀드에서, AUD 80,744,887.05는 한화펀드에서, 즉 각 50%씩 대출약정) |
| **담보** | • 차주가 개설한 각 Revenue Account에 대하여 Guernsey 법률에 따른 질권 설정  • 차주가 보유한 Aberdeen Infrastructure Investments (Mundaring) Ltd, Aberdeen Infrastructure Investments (NRAH) Ltd 및 Aberdeen Infrastructure Investments (NGR) Ltd.의 각 지분에 대하여 Guernsey 법률에 따라 1순위 근질권 설정  • 차주가 보유한 Aberdeen Infrastructure Investments (No 4) USA LLC 지분에 대하여 Delaware주 법률에 따라 1순위 근질권 설정  • 기타 금융서류에 따라 차주가 제공하는 여하한 담보 |
| **자금용도** | • AGIP 지분 인수 관련하여 해당 펀드 기존 LP들에게 인수대금 목적 지급되며, 기존 LPA에 의거 분배 예정 |
| **예상 금융종결일** | • 2021년 2분기 예상 |
| **만기일** | • 금융종결일로부터 28년 |
| **Debt Service 주기** | • 반기 지급 |
| **이자율** | • USD : 고정 4.25%  • AUD : 고정 4.25% |
| **PIK** | • 이자 부족분 발생시, 대출 원금에 가산 |
| **자발적 조기상환** | • 차주는 자발적 조기상환 가능하며, 대출 전기간에 대해 Prepayment Fee로 Make-Whole 적용  • USD 할인율 : 0.50% (50 basis points) + 기준할인율  • AUD 할인율 : 0.50% (50 basis points) + 기준할인율 |
| **의무 조기상환** | • Cash Sweep : Cash Sweep Schedule에 따라 배당 전에 반기별 Cash Sweep 진행함  • 자산의 처분시 매각대금 또는 해지시 지급금 등 Capital Redemption 금액 수령시  • Adelaide Dispute 해소 후 첫 배당 발생시 분배 금액의 100%를 AUD 18,930k에 해당하는 총액까지 조기상환 진행하며, Cash Sweep Prepayment Schedule (Schedule 7)의 Part II: Payment Schedule (AUD Facility)상 해당 시점 이후의 Closing Balance에 대해 해당 조기상환금원(단, AUD 18,930k을 한도로 함) 차감 조정 |
| **Cash Sweep** | • 차주 배당 전 Cash Sweep Schedule에 따라 Cash Sweep을 진행하며, Schedule 대비 Sweep 부족분 발생시 누적적으로 다음 번 Cash Sweep에서 상환됨 |
| **통화** | • 각 Tranche의 상환은 해당 통화로 진행되어야 함  ※ 특정 통화 상환재원 부족 경우 발생시, 상호보완적(USD<->AUD)으로 원리금 상환 진행 |
| **Revenue Account** | • AGIP 펀드는 USD / AUD Revenue Account 각각 보유 |
| **Waterfall** | i) 대출 관련 비용(법률, 담보, admin 등)  ii) 펀드 관련 비용(운용보수, 회계감사 등)  iii) 이자 발생분, PIK 이자 발생분  iv) PIK 원금  v) 의무조기상환 원금(Cash Sweep 및 기타 경우)  vi) 자발적 조기상환  vii) 대출만기 잔여 원금 일시 상환  viii) 대출계약상 restricted payments(배당 등) |
| **진술 및 보장** | • 통상적인 대출계약에 준하여 준비 |
| **준수사항** | • 통상적인 대출계약에 준하여 준비  • Negative Covenants 의 경우, DSCR 조건 없으며, Waterfall상  대출 관련 모든 금원 지급 후 배당 가능 |
| **대주의 의사결정** | • 대주 전원동의가 필요한 사항:   * “Majority Lenders”의 정의에 변경 및 영향을 끼칠 Finance Documents의 수정 및 면제에 대한 사항 및 일부 대출 사항 * 선불 또는 취소 및 이자, PIK Interest, 및 PIK Amounts 관련 election 후 Finance Documents에 따른 모든 금액의 지불 날짜 연장 * 원금, 이자, PIK Interest, PIK Amount, 수수료 및 지불할 커미션 금액의 감소 * 지불 통화의 변경 * Commitment의 증가, Availability Period의 연장 및 Commitments의 취소로 인해 Finance Documents에 의하지 않은 Facilities에서 대주의 Commitments가 감소되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 * 대주 전원동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 Transaction Security가 분배되는 경우 집행 수익의 범위 * 본 계약 또는 기타 Finance Documents에서 허용하지 않는 Transaction Security의 해제   • Agent 및 Security Agent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수정 및 면제 사항은 경우에 따라 Agent 및 Security Agent의 동의 필요 • 상기에 포함되지 않는 Finance Documents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Majority Lenders가 의사결정함. |
| **인출선행조건** | • 차주 및 General Partner 관련 서류   * 차주 관련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Investment Advisory Agreement 및 Assignment and Assumption Agreement * General Partner의 실체확인서류 및 내부수권서류(이사회의사록 등) * 차입 한도 준수 등 관련 확인서   • 금융서류   * 대출약정서, 담보서류 및 수수료약정서 * 담보서류 관련 통지서 * 주권, 양도증서 * Aberdeen Infrastructure Investments (Mundaring) Ltd, Aberdeen Infrastructure Investments (NRAH) Ltd 및 Aberdeen Infrastructure Investments (NGR) Ltd.의 정관 개정 승인에 관한 각 서면결의서   • 법률의견   * 대리기관 및 담보대리기관의 England 법률자문사의 법률의견서 * 대주의 Delaware주 법률자문사의 법률의견서 * 차주의 Guernsey 법률자문사의 법률의견서   • 기타 선행조건   * Finance Document 상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Default)가 발생하지 않았고 인출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Default)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 England법에 따라 process agent가 적법하게 선임되어 이를 수락하였을 것 * 관련 규제 당국이 “know your customer”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 및 정보 일체가 적절히 제공되었을 것 * 해당 현지 법률자문이 Escrow Agreement 및 Purchase Agreement에 따른 서면통지(Written Notice)를 수령하였을 것 * 대출약정상 차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수수료 등 비용이 그 지급기일에 적절히 지급되었거나 인출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지급될 예정일 것 * 기타 대출약정 Schedule 2에서 정하는 선행조건이 충족되었을 것 |
| **준거법** | • England and Wales |
| **법률자문** | • 차주: Mourant Ozannes (Guernsey)  • 대주: Clyde & Co LLP (England) / Morris, Nichols, Arsht & Tunnell LLP (Delaware) |